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4. 29 선고 2021가단636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0. 27 선고 2022나43310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4. 29 선고 2021가단6368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종결 2022. 3. 25.

판결선고 2022. 4. 29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24.부터 2021. 7. 2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8.경 피고로부터 340,000,000원(= 2019. 8. 2. 120,000,000원 + 같은 달 11. 120,000,000원 + 같은 달 20. 100,000,000원), D으로부터 50,000,000원을 차용하면서, 변제기를 2020. 4. 20., 위 전체 차용금 390,000,000원에 대한 이자를 157,500,000원(약 연 59%)으로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는 피고에게 2020. 4. 21.경 원금 340,000,000원을, 같은 달 23.경 이자로 112,307,690원을 변제하여 합계 452,307,690원을 변제하였다.

다. 한편,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%이고{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8413호)}, 이에 따른 위 기간 동안의 차용원리금은 합계 397,239,263원(= 원금 340,000,000원 + 이자 57,239,263원)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하여

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,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(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, 제4항,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8다9968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55,068,427원(= 112,307,690원 - 57,239,263원)을 지급하였는데

이는 원본에 충당되므로,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55,068,427원을 초과 변제한 셈이어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

1) 피고는, 원고가 원금(340,000,000원) 외에 지급한 위 112,307,690원은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바(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등 참조), 갑 제1호증(약정서)에 명백히 ‘차용이자’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이자제한법 제4조에 “예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체당금,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.”고 규정되어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금전의 대여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로 간주되므로, 위 112,307,690원이 수수료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.

2) 피고는, 원고 스스로 위 약정서(갑 제2호증)를 작성하였고, 그럼에도 원고가 위 약정서에서 정한 담보(E, F호)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, 원고와 피고가 약정서에 서명·날인한 이상 약정서를 누가 작성하였든 간에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, 원고가 약정서에서 정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.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2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. 7. 2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허명욱